

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0. 12.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함
- 따라서 감채기금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등으로 조성하고,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다.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, 그 위원회는 이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조성) ①지방채상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
 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-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

제4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이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(제44회 제2차 정례회 -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)

제6조 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7조 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감사실장
2. 기금출납원 : 예산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 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기획감사실
입	설 : 과장 직위 : 성명	기획감사실장 고용석
안	담당 : 팀장 직위 : 성명	예산담당 연용희
자	담당자 성명 · 전화	이보철 2052, 2055